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42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본 출연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사업내용	- 장학사업 추진 - 교육지원 사업
출연금의 범 위	- 기본재산 적립 및 운영비 - 인재육성 장학금 -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사업 -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 사업 - 해외 연계 체험형 교육 사업 등
출연금액	1,698,148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5. 검토의견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2024년 1월 정식 출범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년간 ▲맞춤형 장학사업 ▲해외 선진 항공우주캠프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1,154,027천원이고,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1,698,148천원으로 2024년보다 544,121천원이 증가함. 이는, 교육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짐.
 - 한편,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43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출연대상	(재)영등포문화재단
사업내용	-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 관리 -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및 운영, 활성화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출연금의 범위	-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문화행사 추진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관리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출연금액	12,329,464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추진 등) 및 제6조(사업의 지원)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먼저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천원)

출연금액	세부내역	
12,329,464	재단본부 인력 운영 및 구민회관 운영관리	3,514,314
	지역 대표문화콘텐츠 기획 및 생활예술 지원사업 추진	963,917
	공연기획 운영 및 문화행사 홍보 활성화	603,916
	문화도시 환경조성	11,524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	265,633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6,405,958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564,202

-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과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위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 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추진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